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신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/2/3

발의연월일: 2015. 11. 12.

발의의원 : 신영희 의원, 김성택 의원

1. 제안이유

O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과 관련 하여, 청원 신청 및 철회 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 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별지 제1호 서식(청원소개의견서) 및 별지 제2호 서식(청원철회요구서) 내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변경(안 제2조 및 제14조)
- 3. 개정규칙안 : 붙임
- 4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:「개인정보 보호법 」제24조 및 제24조의2 「국회청워심사규칙」제2조~제5조

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"를 "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"로 하고, "효율적인"을 "청원에 대한 효율적인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의회"를 "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"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"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"를 "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을"로하고, "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"를 "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"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"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."를 "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「청원법」제5조·제8조 및 「국회법」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청원법」제8조에 따라"로 하고, "경우에는"을 "경우에"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"의 규정에 의한"을 "에 따른"으로 하고, "의 규정에

따라"를 "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본회에"를 "본회의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특별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"를 "특별위원회"로 하며, 제6조제4항, 제7조, 제8조제1항,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, 제17조 중 "위원회"를 각각 "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"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당해"를 각각 "해당"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 호의 1에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한다.

제15조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의 규정에 의한"을 "에 따른"으로 하고, "지방자치법"을 "「지방자치법」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청원소개의견서

청 원 인	주소			
경 전 인	성명		생년월일	
건 명				
소개연월일				
소 개 의 견				

소개의원

(서명 또는 인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청원철회요구서

청 원 인	주소	<u>ک</u>			
· 경 전 인	성명			생년월일	
건 명					
청원제출일자		청원철회		회일자	
철회요구사유					

소개의원

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혀 행 개 안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시행|제1조(목적) ------령 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---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----달성군의회(이하 의회 라 한다)에 제출 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 청원에 대한 효율적인 -----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의회에 청원을 하 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대구광역시 달성 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-----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(이하 의원이라 한다)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 ②-----성명(법인인 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소)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 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시하 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 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 다. 다.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 서를 【별지 제1호 서식】에 의거 작성 -----【별지 제1호 서식】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 첨부하여야 한다. 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 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이「청원법」제5조·제8조 및 「국회법」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 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 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 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하여야 한다. 1. 재판에 간섭하는 것 2.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.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 상에 제출된 것 4. 법령에 위배되는 것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	제5조(이의신청) ①
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<u>의 규정에 따라</u>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.	
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와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(이하위원회 라 한다)에 회부할 수 있다.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은 요구할 수 있다.	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<u>위원회</u> 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<u>위원회</u> 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	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
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본회의 또는 <u>위원</u> 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 략) ②본회의 또는 <u>위원회</u> 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<u>당해</u>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·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</u> 의원의 이 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 에 의한다.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 는 <u>위원회</u> 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	(2) (현행과 같음) 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 (2)
세 10소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성원) <u>위원회</u> 는 청원이 다음 <u>각 호의 1에</u>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기로 의결한다. 1. ~ 3. (생 략)	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 원)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심사보고)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 1. ~ 2. (생략)	제11조(심사보고) ①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
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 1.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<u>위원회</u> 에의 회부 2. <u>위원회</u> 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. ~ 5. (생 략) 제15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)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<u>당해</u>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1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 <u>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지</u> 방자치법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제16조(징계) 에 따른 「지방
제17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위원회 조례」와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7조(준용규정) <u>위원회 또는 특별위원</u> <u>회</u>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- 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-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- ② 삭제 <2013.8.6.>
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.> ④ 삭제 <2013.8.6.>
- 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 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-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□ 「국회청원심사규칙」 제2조 (청원서의 제출)
-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- □ 「국회청원심사규칙」 제3조 (소개의견서 첨부)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□ 「국회청원심사규칙」 제4조 (청원서 보완요구)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.
□ 「국회청원심사규칙」 제5조 (불수리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·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3.18.>
□ 「청원법」 제5조 (청원의 불수리)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 1. 감사·수사·재판·행정심판·조정·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·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
2.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.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
4. 청원인의 성명·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□ 「청원법」 제8조 (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)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

□ 「국회법」 제123조 (청원서의 제출)

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
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신 영 희	1000 E	SI
김 성 택	71 4 3	Go 3